

IHP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지침

1. 위원회의 구성

현 회장단(회장 1, 부회장 3명) 과 원로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
2. 위원회의 임무

위원회는 IHP 사업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의사결정 임무를 가진다.

3. 사업관리 세부절차

- 1) UNESCO/IHP 목표에 맞추어 수행할 연도별 중점연구분야를 결정한다.
- 2) 학술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연도별 중점연구분야에 맞추어 구체적인 수행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, 제출토록 한다.
- 3) 제출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안과 연구책임자를 과제별로 결정한 후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후 계약토록 한다.
- 4) 과업수행 중 추진내용을 감독하며 수행결과를 평가한다.

4. 연구책임자의 임무 및 자격제한

- 1) 개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사업수행 규칙 제6조 3항에 의거 과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학회또는 논문지에 과업수행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2) IHP 사업중 대표유역 조사팀의 연구책임자는 조사 결과의 개요와 IHP 관련 국제 회의에 참가할 경우 회의 참석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하여야 한다.
- 3) 연구능력이 있는 회원의 광범위한 사업참여를 위해 회원 1인이 6년간 2회를 초과하여 연구과제를 부여받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학회 사무국은 수자원학회지에 발표한 보문 또는 논문의 별쇄본을 취합하여 과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